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충주지청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중대재해 적용기준 처리지침 변경 안내 및 지도 요청

1. 평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귀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정의(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그간 우리 지청에서는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에 대해 '최초 의사소견서상 치료예상일수가 3개월 이상인 초진일수'를 기준으로 적용하여 조사대상 재해를 파악하였으나, 2019년 1월부터 중대재해 적용기준 개선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동시 2명 이상 부상자의 **실제 요양기간이 3개월 이상으로 확인되면 중대 재해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주요 처리지침 개선방안>

- 현행 초진일수 기준 외 “실제 요양기간” 기준도 같이 적용하여 최초 의사소견서상 치료 예상일수가 3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실제 요양기간이 3개월 이상인 동시 2명 이상 부상 재해”에 대해서 중대재해로 조사
- 근로감독관이 요양기간 3개월을 초과하는 시점에 해당 사업주에게 중대재해 발생보고 의무가 발생하였음을 안내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중대재해 발생 보고 의무 위반’으로 간주(과태료 부과, 3천만원)

4. 이에 최초 의사소견서상 치료예상 일수가 3개월 미만인 부상재해(동시 2명 발생)도 실제 요양기간이 3개월을 경과하게 되면 그 시점부터 중대재해로 적용되게 되므로, 각 기관에서는 사업장(건설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또는 기술지도 시 **요양기간 3개월을 초과하는 시점에 사업주에게 중대재해 발생보고 의무가 발생함**을 안내하여 주시고,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위 내용에 대해 적극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지방고용노동청충주지청장



수신자 관내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대표자 귀하,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대표자 귀하

근로감독관 **인종엽** 과장 전결 2019. 12. 5.
김규성

협조자

시행 산재예방지도과-7686 (2019. 12. 5.) 접수

우 27428 충청북도 충주시 국원대로 3-3 (봉방동 21-36 대전지방고용
노동청 충주지청) / <http://www.moel.go.kr/chungju/>

전화번호 043-840-4035 팩스번호 043-845-7767 / jyahn2016@korea.kr / 비공개(5)

" 모든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